

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합니다!

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안내드립니다.

1 세정지원 대상

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「중소기업」이 대상입니다.

'25사업연도(개인은 '25년 귀속) 수입금액이 **1,800억 원** 이하인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중소기업

- **(법인)**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거나 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
- **(개인)**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

1-1 상시근로자 수 증가 요건

'2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**'26년 대비 2%·3%(최소 1명) 이상**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경우 **「일자리창출계획서」**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기업이 대상입니다.

1-2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

'25사업연도 수입금액	500억 원 미만	500억 원 이상 ~ 1,800억 원 이하
기준비율	**2%** 이상	**3%** 이상

1-3 청년 등 우대 혜택

청년 등을 고용하면 일자리창출 인원을 더 크게 인정합니다!



청년·고령자·장애인 고용

1명 → **2명**

상시근로자 수로 계산

청년창업 중소기업

1명 → **2명**

상시근로자 수로 계산

※ 청년 : 15세 이상 34세 이하
고령자 : 60세 이상
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적용 받는 장애인

2 세정지원 내용

상시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다음과 같은 세정지원을 받습니다.

법인세·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**제외됩니다.**

-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은 '25사업연도(귀속) 법인세·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**제외**됩니다.

3 세정지원 배제

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1.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
2. 체납, 조세범, 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
3.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법인·개인사업자

4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방법

제출기간 : **'26. 11. 2.(월) ~ 11. 30.(월)**

홈택스(법인·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)

지급명세·지료·공익법인 관련 자료 제출 > 과세자료 제출 > 소득·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>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

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